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018호 2016년 10월 17일(월)

공 고

-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4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 속초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5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속초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

－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과 같이 지원사업의 구체적 의미를 내포

하도록 조례 제명 개정

나.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근거법령을 수정함(안 제1조)

- 현 조례 근거조항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은 개정되어 조례 목적 근거로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을 근거법령으로 명시

다. 조례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라. 사업 지원대상을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현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지원대상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명시

마. 지원신청 시 각급 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5조)

- 강원도 조례에서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도 교육장이 검토하여 일괄 신청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

바. 지원대상자의 의무 신설 (안 제7조)

- 학교 등에 지원목적에 맞는 집행과 안전한 우수농산물 사용 노력, 조사 및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보조금 관리에 적정성 기여

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등 규정 구체화(안 제8조~10조)

-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기
-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한 쪽 성의 비율이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안 제8조 제2항)
- 위원회의 심의 안전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9조)

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8조 4항)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정비대상으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준수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위원회 안전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자. 시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12조)

－ 시에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여부 지도·감독, 위반시 지원금의 반환등을 할 수 있는 규정 명문화

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13조)

4. 기 간 : 2016. 10. 17 ~ 2016. 11. 7 (21일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1월 7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육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

(☎ 033-639-2779, FAX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속초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 나.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 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부시장,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3. 속초시의회 시의원
4.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학부모
5.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소속 교사
6.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
7. 시에 소재한 농민단체 대표자

8.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운영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이 포함된 회의서류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급식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15.7.24.)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정비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대학의 통합 이전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 수정(안 제1조)

－ 기존 조례목적에서 지역대학의 육성 내용 삭제

○ 조례 근거법규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변경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를 “2018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로 변경

○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규칙에 규정되었던 애향장학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장학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10조의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장학금 중복

수혜금지 조항 명시(안 제16조)

4. 기 간 : 2016. 10. 17 ~ 2016. 11. 7 (21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육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

(☎ 033-639-2779, FAX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속초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중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을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경비”를 “모든 경비”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 해당”으로, 단서조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를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학회 구성) ① 장학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청 5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라. 그 밖에 학교 교육과 시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된다.

④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회의) ① 장학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1회 개최한다.

제10조의4(제척·기피·회피) ①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제15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 및 수업료 등(이하 “등록금등”으로 한다) 을 전액 면제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등록금등을 일부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면제 받은 액수를 제외한 등록금등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를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고등학생·대학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대학의 육성과 국가·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u>	<u>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역대학”이라 함은 관내에
소재한“동우대학”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 조성·관리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장
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
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
로 조성한다.

1. (생 략)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③ (생 략)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

제2조(정의) -----
----- 뜻은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의 수입금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생략)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
요한 제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
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
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2 .

----- 모든 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단,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에 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② ----- 「지방재정법」 제77조-----

③ ----- 해당-----

----- 해당-----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

----- 기금결산보고서-----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4조에

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금운
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
용·관리하기 위해 속초시애향장
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
-----.

제10조(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0조의2(장학회 구성) ① 장학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속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
원실장, 교육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신 설>

<신 설>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5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라. 그 밖에 학교 교육과 시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된다.

④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회의) ① 장학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1회 개최한
다.

제10조의4(제척·기피·회피)① 해
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
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11조(장학회 구성·운영 등)

장학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격요건) ① 장학금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

학에 재학중인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예술·체육 분야 특

기자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별

도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삭 제>

제12조(자격요건) ① -----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

-. -----

-----.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대학에 1년 이
상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② (생 략)

제1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①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 규모,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
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급
했거나 지급할 장학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장학
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
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지급
한다.

제15조(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①

- 해당 -----

-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

② -----

-----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중단) -----

---- 사람에게 -----

-----.

1. ~ 3. (생략)

4. 타 대학교로 학적을 옮겼을 때

5. 기타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하되 일반지원자의 후순위로 한다.

제19조(수당) 장학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그 밖에

--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 및 수업료 등(이하 “등록금등”으로 한다)을 전액 면제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등록금등을 일부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면제 받은 액수를 제외한 등록금 등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

----- 범위
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않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은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향토학사 선발시기 등 학사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 일부개정
-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 학사선발 일정과 맞지 않는 입사생 선발공고 규정 수정(안 제2조)
- 남녀 입사생 선발인원 향토학사 운영현황에 맞게 정정(안 제6조)
 - 기존 : 남학생 15, 여학생 15 ⇒ 정정 : 남학생 16, 여학생 14
 - 매년 줄어드는 신입생 수를 고려하여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

비율 삭제

- 그 밖에 규칙 일부 미비사항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4. 기 간 : 2016. 10. 17 ~ 2016. 11. 7 (21일간)

5. 관계법령 : 불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1월 7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육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

(☎ 033-639-2779, FAX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속초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1월중**”을 “**입사선발 전년도 12월 또는 입사선발 년도 1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향토학사의 입사신청 대상은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를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지역배정 비율에 맞게 30명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적 50퍼센트(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가정형편 40퍼센트(재산세 및 과세액 기준)
3. 복지 및 우대 요건 1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2개 이상 해당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동점시에는 모두 적용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년도 1년으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는 해당년도의 선발에 의한다”를 “해당연도 1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을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토학사 입사 신청서

[다산관 · 예지원 · 국제생활관]

신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학 교 명	대학교		대학	학부	학과	년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성 적	신입 생	수학능력시험 성적		재 학 생	1학기	2학기	학년평균
	출신학교	고등학교 년(졸업, 중퇴)				졸업년도		
친 권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귀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관생으로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자 : (인) 친권자(후견인) : (인) 속초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① 재학증명서(재학생) 1부. ② 합격통지서(신입생) 1부. ③ 직전학년성적증명서(재학생) 1부. ④ 수학능력시험성적표(신입생) 1부.				⑤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해당자) 1부. ⑥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1부. ⑦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1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이하 " <u>조례</u>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 -----.
제2조(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조(입사생 선발공고) ----- ----- ----- <u>입사 선발 전년도 12월중</u>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입사신청 자격) <u>조례 제6조에 의한 입사신청자격은 속초시에 주소</u> 를 둔 속초시민의 자녀로서 <u>출생시 소재 2년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u>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u>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u> 2. <u>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u> 3. <u>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u>	제3조(입사신청 자격) <u>향토학사의 입사신청 대상은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u>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u> 2. <u>감염성</u> ----- <u>사람</u> <삭제>
제4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향토학사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 1부.
2. 합격통지서(신입생에 한함) 1부.
3.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제5조(선발시기) 향토학사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선발인원)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입사생 선발인원 :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
2.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 : 신입생 40%, 재학생 6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선발된 학생수가 그 배분비율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신청인원의 범위 안에서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에 따른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선발인원) ① -----
--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지역배정 비율에 맞게 30명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생 략)

제7조(선발심의 및 결정)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장이 결정한다.

1. 성적 50%(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가정형편 40%(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액 기준)
3. 기타 10%(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단, 2개 이상 해당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동점시에는 모두 적용한다.

② 동점자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1가구 1명으로 한다.

제8조(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입사 권한은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선발심의 및 결정) ① -----
----- 각 호와 -----

-----.

1. 성적 50퍼센트(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가정형편 40퍼센트(재산세 및 과세액 기준)
3. 복지 및 우대요건 1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다만, 2개 이상 해당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동점시에는 모두 적용한다.

② -----
----- 수급자-----

-----.

제8조(입사권) -----
----- 해당연

당해년도 1년으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는 해당년도의 선발에 의한다.

제9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생략)

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도 1년으로 한다.

제9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장-----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5. 7. 24개정(시행2016. 1. 1)된 바, 조례 근거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운영상 미비점 개선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기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장학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 제4조)

○ 장학생 신청자격 조항 중 지역대학 규정 삭제 및 고등학교 검정 고시 출신 대학신입생 신청자격 규정 신설(안 제5조)

○ 현행 애향장학금 신청자격 기준 4.0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 교내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며 등록금 이중수혜도 국가정책상 금지된바, 이러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인재육성의 목적에 부합하고 타 시군 장학생 선발기준 및 국가장학금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애향장학금 신청자격기준 완화(안 제5조제3호)

☞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을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0이상인’으로 개정

4. 기 간 : 2016. 10. 17 ~ 2016. 11. 7 (21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육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

(☎ 033-639-2779, FAX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속초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전단 중 “**성적**”을 “**평균등급**”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를 “**일반대학교**”로,
“**신입생과**”를 “**신입생과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으로,
“**4.0 이상인 지역 또는**”을 “**3.0 이상인**”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1. 인적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장학회 구성) ① 「속초시에 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조례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에향장학 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 하로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 실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속초양양교육청 5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라. 그 밖에 학교 교육과 시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전문가 3명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 관 업무담당이 된다.	<삭 제>
제3조(임기) ①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	<삭 제>

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
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장학회의 회의는 정
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
다.

② 정기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기
금결산을 위해 연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회장이 부의
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3.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
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
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
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

<삭 제>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

-----.

1. · 2. (현행과 같음)

3. ----- 평균등급
----- 일반대학교

----- 신입생과---검정
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인 일
반대학교 신입생, -- 3.0 이상인

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생 략)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장학금 지급액 및 기타

--.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

-----.

1. ~ 5. (현행과 같음)

6. ----- 그 밖에 사항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경관 조례

2. 제정이유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중 경관지구내 심의대상이 행정규제가 과도하고, 소규모 건축주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관지구내 심의대상을 완화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중 경관지구의 심의대상 완화 (안 제26조)

- 경관지구의 심의대상중 심의제외 건축물이 기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로 심의 제외대상 완화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구체화

나. 경관심의를 득한후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생략 규정 신설(안 제29조)

- 건축물의 규모 변경시 100분의 10이하 및 디자인 변경시 100분의 30 이하
는 심의생략

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구체화(안 제32조)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자문대상을 디자인의 “일부분” 변경에서
“100분의 30 초과”로 자문대상 구체화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건축디자인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경관
디자인팀)
- 연락처 : 033-639-2766 (FAX 033-639-231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033-639-27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경 관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속초시 경 관 조 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

제26조제2호 중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로 한다.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디자인(색채, 형태, 재질 등)을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32조제3호 중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을 “디자인(색채, 형태, 재질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 1. -----.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생략)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 6. (생략)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략)

<신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m² 미만의 건축물

나. (현행과 같음)

2.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

3.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디자인(색채, 형태, 재질 등)을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3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말한다.

1. · 2. (생 략)

3.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 변경하
고자 하는 사항

4.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디자인(색채, 형태, 재질 등)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4. (현행과 같음)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2. 제정이유

- 중앙부처 협업을 통한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의 변경
- 나.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법률조항 명시(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의 구분 및 세분화(안 제3조)
- 라. 민주성, 공정성 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제3항
- 마. 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 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안 제1조 ~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연락처 : 033-639-2729 (FAX 033-639-23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3-639-27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
2.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3.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각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전부개정]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04.08.] (전부개정) 2016.04.08 조례 제2465호

제20조(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1982.04.28 조례 제 801호

제3조(일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04.28]